제 9강 비정규직 근로자

임서정

오늘의 학습목표

- ▶ 01. 비정규직 근로자의 의미
 - 비정규직 근로자란 무엇인가?
 -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특별히 적용되는 법률에는 무엇이 있는가?
- ▶ 02. 근로계약의 기간
 -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에 대한 제한은?
 - 파견근로자의 사용에 대한 제한은?

01. 비정규직 근로자의 의미

1. 비정규직 근로자

(1) 비정규직의 의의

- ◆ 통상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이 아닌 근로자**를 말함
 - ▶ 임시직, 일용직, 단시간 근로계약자, 파견근로자, 특수고용직 등을 포괄해 정규직이 아닌 모든 근로자를 비정규직이라 말함
- ◆ 그러나 법에서는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음
 - 대신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들에게 적 용되는 법을 별도로 두고 있음
 - ▶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아니기는 하지만 근로자인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근기법이 나 최저임금법과 같이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노동관계법제의 적용을 받는 것은 당연
 - 다만, 정규직 근로자들과 달리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기간제법이나 파견법이 별도로 적용

1. 비정규직 근로자

(2) 비정규직 근로자 여부의 판단

- ◆ 정규직 근로자인지 비정규직 근로자인지의 판단은 **근로계약의 형식과는 상관이 없으며, 근로의 실질의 문제**임
- ◆ 다시 말해 비정규직 근로형태를 정하고 있는 기간제법이나 파견법의 기간제근로, 단시간근로, 파견근로의 내용으로부터 정해지는 것임
 - 예컨대 어떤 근로자들이 근로형식과는 상관없이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형태를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정규직 근로자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정규직 근로자로,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또는 파견 근로자로 볼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한 근로자로 보게 됨
 - 반대로 근로계약의 형식상 기간제나 단시간 또는 파견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근로의 설 질상 정규직 근로자와 다름이 없다면 정규직 근로자로 보게 됨

2. 기간제근로자

(1) 기간제근로자의 의의

- ◆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함(기간제법 제2조 제1호)
- ◆ 일상적으로는 기간제근로자라는 말 대신에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촉탁직, 아르바이트 등의 용어를 많이 사용
 - 어는 경우이건 해당 근로자가 기간을 정해 두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법률상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여 기간제법을 적용받음

2. 기간제근로자

(2) 기간제 근로계약의 내용

- ◆ 기간제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사항은 반드시 서면에 적어 명시하도록 함(기간제법 제17조)
 - 근로계약의 기간에 관한 사항, ②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③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④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⑤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 위반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질 수 있음
- ◆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과 관련, 정해진 최단기간에 대한 제약은 없지만, 최장 기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2년을 넘지 않도록 정하고 있음(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
 - >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
- ◆ 기간제근로자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기법, 노조법, 최저임금법, 퇴직급여법 등 근로자 에 관한 법 모두 적용

3. 단시간근로자

(1) 단시간근로자의 의의

- ◆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함 (기간제법 제2조 제2호, 근기법 제2조 제1항 제9호)
 - ▶ 단시간근로자는 일상적으로는 파트타임근로자, 아르바이트, 임시알바 등으로 불리는데, 어느 경우이건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법의 적용을 받게 됨
- ◆ 단시간근로자가 되려면 통상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몇시간이나 짧아야 하는지 또는 1주 동안에 며칠이나 일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따라 정하고 있는 것이 없음
 - ▶ 따라서 통상 근로자에 비해 소정근로시간이 짧기만 하다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게 됨

3. 단시간근로자

(2) 단시간 근로계약의 내용

- ◆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함(기간제법 제17조)
 - 근로계약의 기간에 관한 사항, ②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③ 임금의 구성항목•계산 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④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⑤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⑥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 위반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음
- ◆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기간제법 제6조 제3항)
 - ▶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소위 **'법내초과근로'**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소정근로시<mark>간을 초과</mark> 하는 것이라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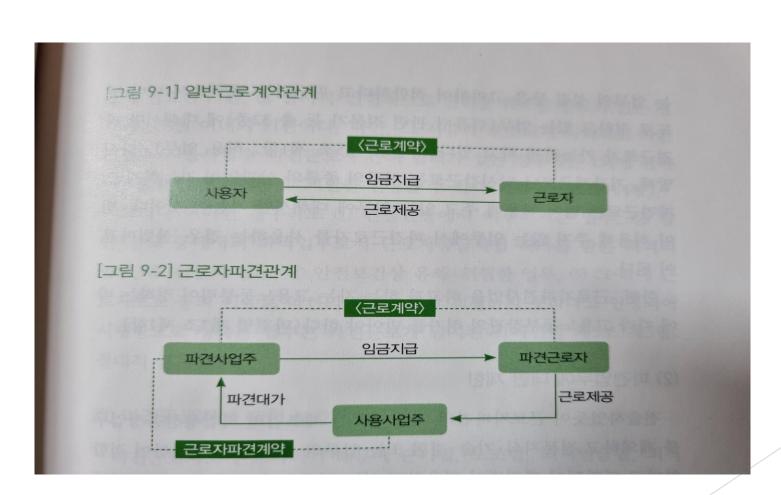
4. 파견근로자

(1) 파견근로계약의 의의

- ◆ 일반적인 근로계약관계에서는 노사관계가 하나의 사용자와 하나의 근로자 사이에서 나타나지만, 파견근로계약관계에서는 노사관계가 둘의 사용자(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와 하나의 근로자 사이에서 나타남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파견사업주이지만, 파견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대상은 사용사업주이고, 이 과정에서 지휘감독을 실시하는 것은 사용사업주 가 됨
 - ▶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로부터 파견의 대가를 받아 이 중 일부를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지급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가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임
- ◆ 이와 같이 3자간의 노동관계는 상당히 특수하기 때문에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파견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는 것임

01. 비정규직 근로자의 의미

4. 파견근로자



4. 파견근로자

(2) 파견업무에 대한 제한

- ◆ 근로자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법이 별도로 정하고 있는 업무(컴퓨터 관련 전문가 등 총 32종)에 대해서만 파견근로가 가능하게 하고 있음(파견법 제52조 제1항: 허용 업무)
 - ▶ 다시 말해, 기간제근로나 단시간근로는 업무의 종류와 상관없이 가능하지만, 파견근로 는 법이 허용해 주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함
 - ▶ 법이 허용해 주지 않는 업무에서 파견근로는 **'불법파견**'이 됨
- ◆ 한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파견법 제7조 제1항)

4. 파견근로자

- ◆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넘지 못하지만**,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음
 -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함
- ◆ 법이 허용해준 파견업무가 아니더라도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경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 사업을 행할 수 있음(파견법 제5조 제2항: 예외적 허용사유)
 - ▶ 이러한 예외적 허용에 따른 파견의 기간은 ① 출산•질병•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시간, ②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으로 함

01. 비정규직 근로자의 의미

4. 파견근로자

- ▶ 다만,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파견법 제6조 제4항)
- ◆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다음의 업무는 **파견근로가 금지**됨(파견법 제5조 제3항: 절대 적 금지업무)
 - 1 건설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② 항만•철도 등에서의 하역업무로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③ 선원의 업무, ④ 안전보건상 유해•위험한 업무, ⑤ 그 밖에 근로자보호 등의 이유로 파견의 대상으로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어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

4. 파견근로자

(3)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

- ◆ 파견근로관계에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의 지배를 동시**에 받음
 - ▶ 파견근로자는 업무의 내용에 대한 지휘감독은 사용사업주로부터 받고, 근로계약은 파견사업주와 체결하는 특성이 있음
 - 즉 1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2명의 사용자가 존재하는 것이며, 이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이 2명이고, 파견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 도 2명이라는 의미임
- ◆ 파견법은 이러한 파견근로자의 특성에 따라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노동관계 상 의무를 분담시키고 있음(파견법 제22조~제33조)
 - ▶ 또한 파견법 제34조 및 제35조는 근기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파견근 로자에 대하여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가 갖는 의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5. 간접고용근로자

(1) 간접고용근로자의 의의

- ◆ 간접고용이란 기업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지만 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다른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직접고용데 대비되는 개념임
- ◆ 이와 같이 자신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아닌 다른 기업의 지휘•감독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소위 '간접고용근로자'라 함
 - ▶ **사내하청근로자, 용역근로자, 도급근로자** 등이 이에 해당

4. 파견근로자

(2) 간접고용의 제한

- ◆ 간접고용근로자는 **고용형태가 파견근로자와 매우 유사**
 - ▶ 그러나 파견근로자는 엄격한 파견법의 적용대상인 반면, 간접고용근로자는 파견근로자 가 아니기 때문에 **파견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음**
 - ❖ **파견근로자**는 동일한 사용사업주와 2년 이상 파견근로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인정되나, **간접고용근로자**는 파견근로자가 아니므로 사용사업주와 2년 이상 간접고용관계를 맺고 있어도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 따라서 **파견법의 엄격한 적용을 피하고자 하는 적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간접고용 근로방식을 통해 파견근로자를 이용하는 효과를 누리고자 함
 - ▶ 간접고용근로자와 파견근로자의 가장 큰 차이는 사용사업주로부터 직접적인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에 있으므로, 계약의 형식상 간접고용근로자라 할지라도 사용 사업주로부터 직접적인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파견근로자임

02. 근로계약의 기간

1. 기간제법의 근로계약 기간

(1) 기간제법 사용기간제한과 무기계약간주

- ◆ 기간제법은 동일한 근로자를 기간제로 지나치게 오랫동안 사용하는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기간을 제한
 -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
 - ▶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봄(기간제법 제4조)
- ◆ 다만 이러한 사용기간에는 **다음과 같이 예외**가 많으며, 이 때에는 2년을 초과<mark>하였</mark> 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음
 - ▶ 이러한 예외는 2년을 넘어 기간제로 사용함이 불가피하거나 사용기간 제한이 없어도 다시 취업하기 쉽다는 취지에서 둔 것임

1. 기간제법의 근로계약 기간

- ▶ ①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②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고령자(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④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등
- ◆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이러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음
 - ▶ 만약 사업의 완료나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이 불명확하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 기간제법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사업의 완료나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 동안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사업의 완료나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이 불명확하다면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고자 한 기간제법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임

1. 기간제법의 근로계약 기간

(2) 무기계약 간주 후의 근로조건

- ◆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계약이 2년을 초과함으로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무기근로계약)이 된 후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 판례에 따르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근로자에 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동일하게 적용됨(대법원 2019.12.24. 2015다254873판결)
 - 그러나 무기근로계약직군을 별도의 직군분리를 통해 일반 정규직 근로자와 구분하여 처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과 해고

(1) 근로계약기간만료 전의 해고

- ◆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종료시킬 의사를 표시하는 경 우 그것은 해고가 됨
 - ▶ 따라서 근로계약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사용자가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는 경우, 해고에 관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

(2) 근로계약기간 만료후의 근로계약 종료

- ◆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해고가 아님
 -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되면 그와 함께 근로계약도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근로계약이 계속되는 것으로 의제되어야 할 때가 있을 수 있음
 - 예를 들면,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임 명시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연장된 것은 아니지만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연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음

2.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과 해고

(3)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 ◆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 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 원칙임
 - →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함(대법원 2014.2.27. 2011두17745)
- ◆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두가지 상황에서 인정될 수 있음
 - ①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 연구원•교수 등 전문직에 갱신의 요건과 절차를 두고 이에 따르는 경우가 많음

2.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과 해고

②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일이 상시적이고 지금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갱신하여 왔다면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음

- ◆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려면 합리적 인 이유**가 있어야 함
 - 업무소홀, 지시위반, 비위행위, 평가미달 등의 사정이 객관적으로 보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계속 고용하기에 부적절할 정도에 이르러야 함

3. 파견법의 근로계약 기간

(1) 파견법의 고용의무규정

- ◆ 근로계약의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을 때 일정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기간 제 근로계약만이 아님
 - ▶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도 총 2년까지 파견기간을 정해 둘 수 있는데,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의무를 부담함(파견법 제6조의2)
 - > 기간제법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것과 달리, 파견법에서는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여함
- ◆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는 위와 같은 경우에만 국한되지는 않음
 -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출산 •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이거나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필요한 기간 이상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 파견법의 근로계약 기간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지 않은 파견사업주로부터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함(파견법 제6조의 제1항)

▶ 물론 이 때 **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면 직접고용효과는 발생하지 않음(파견법 제6조의2 제2항)

(2) 2년을 초과한 파견근로계약의 효과

- ◆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때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음(파견법 제6 조의2 제3항)
 - ①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따름
 - ②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기존의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안됨

03. 아르바이트 근로관계

1. 아르바이트 근로자

(1) 아르바이트의 의미

- ◆ 아르바이트(Arbeit)란 일반적으로 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주부 등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학업이나 본업 이외에 **부업으로 단기 혹은 임시로 하는 일**을 말함
 - ▶ 이러한 용어는 '일', '노동', '업적', '근로' 등의 뜻을 가진 독일어에서 유래함
- ◆ **아르바이트**는 파트타임(Part Time)일 수도 있고 전일근무(Full Time)일 수도 있으며, **파트타임**도 아르바이트인 경우도 있고 **영구적 직업인 경우**도 있음

1. 아르바이트 근로자

(2) 아르바이트 근로자

- ◆ 아르바이트생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기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 다만,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등의 제한(제23조 제1항), 해고구제(제28조~제33조), 휴업수당(제46조),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제한(제50조~제53조), 연차유급휴가(제60조),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함
 - ▶ 1주일에 15시간 미만을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면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함
- ◆ 아르바이트생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mark>합에</mark> 가입할 수 있음

2. 아르바이트 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

(1) 근로계약

- ◆ 근기법과 기간제법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에 관<mark>한 사</mark>항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명시해야 함을 규정
 - ▶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이 근로자에 해당하면 일반근로자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함

(2) 임금 및 퇴직금

- ◆ 근기법의 임금 관련 규정 등은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므로 사용자는 임금지급 4원칙을 위반하면 안됨
 - > 1주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근로한 경우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 최저임금법은 직업의 종류, 장소와 상관없이 일용직, 기간제,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므로 사용자는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 ▶ 최저임금법은 3개월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2. 아르바이트 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

(3) 근로시간

- ◆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됨
 - ▶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일에 40시간, 1일의 경우에는 8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음
 - ▶ 다만, 18세 미만인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에 7시간,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 이상 근무하면 시간의 근로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음

(4) 휴게, 휴가

- ◆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휴게시간의 적용**을 받음. 따라서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음
 - ▶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1주일에 15시간 일하는 경우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음
 - >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도 받을 수 있음

2. 아르바이트 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

(5) 산업재해

- ◆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법의** 보호를 받음
 - 산재법은 사업장의 규모,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편의점, 커피전문점, 식당 등에서 일하는 경우에도 산재법상 산재보험이 적용
 - 따라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요양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요양보상, 휴업보 상을 받을 수 있고 그 기간 동안과 그 후 30일 동안에는 해고도 금지됨

(6) 근로관계의 종료

- ◆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므로 사용자가 **5인 이상 사업** 장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규정도 적용되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근기법 제26조)
 -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참고자료

주 자료: 한국노동법학회(2022), 교양노동법 제3판, 문우사.

보조자료: 임종률(2022), 노동법 제20판, 박영사.

사례참조: 박귀천•박은정•권오성(2021), 노동법의 쟁점과 사례, 박영사.